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

-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사업법」 시행(‘26.4.24.)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5년 기준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궐련) ‘19년 20.3% → ‘24년 18.9% → ‘25년 17.9% / (궐련형 전자담배) ‘19년 3.3% → ‘24년 6.0% → ‘25년 6.3% / (액상형 전자담배) ‘19년 2.6% → ‘24년 4.0% → ‘25년 4.5%

이와 같은 추세에 대응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 → (변경)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6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단속 및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 (흡연실)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이다” 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담당 부서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전은정 (044-202-2820)
	건강증진과	담당자	사무관	박선명 (044-202-2822)



Q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A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흡연행위로 발생하는 유해성분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므로, 현장단속 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자체를 적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속원이 현장에서 액상의 성분을 즉각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흡연 행위 확인 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실을 우선 기록하여 절차를 개시하되,
 -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흡입제품*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명이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제품 또는 '26.4.24. 이전 반출 및 수입신고 된 니코틴 원료 흡입제품

Q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자동판매기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나,
 - ①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②지정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③19세 미만의 자의 담배 자판기 사용이 금지된 흡연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의 주문화면 및 제품 토출구 등 외부 노출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함

** 단, 「담배사업법」 시행 전 유통된 재고제품만 판매하는 판매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재고제품과 규제 대상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기 및 규제 대상 제품만 판매하는 판매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